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개선

- ❖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의 유형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등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
- ❖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 및 하도급공사 검사완료 시기를 분명히 함으로써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방지
- ❖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정보제공 확대 및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하도급 운영시스템 합리화
-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10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분야의 상호 협력적 하도급 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으로 건설분야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크게 시정되고 상호협력적인 하도급거래 관계 조성 등을 통하여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하도급 계약에서의 부당특약 유형을 확대하여 공사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선급금 미지급, 추가공사의 비용전가, 민원에 대한 책임전가 등 다양한 부당특약을 방지함으로써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15일) 및 하도급공사 검사완료 시기(10일)를 명확히하여 부당하게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영세하도급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구체화하여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등 대금미지급 우려가 없는 업체의 경우 불필 요한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건설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규제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독려·점검할 예정이다.
 - 국토해양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 국무총리실에서는 규제합리화 방안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점검하고, 향후 부처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 1.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2.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별도 첨부)

붙임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1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

1-1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 (현행) 하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특약의 유형은 제한적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당특약의 예시

- 추가공사에 따른 금액은 일체 요청하지 않는다
- 시공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하도급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 (개선) 현행 법률에서 부당특약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다양한 형태의 부당특약 유형을 구체적으로 반영

1-2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 (현행)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하나, 시공과 별도의 부품제작·납품계약인 경우 적정성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생

사 례

- ▶ 동일인과 자재납품(하도급률 67%), 시공설치(하도급률 94%)에 대해 각각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자에게는 시공계약만 하도급 통보할 경우 적정성 심사 회피 가능
 - ⇒ 자재납품과 시공설치를 1건으로 보면 하도급률은 70%로 적정성 심사대상
- (개선) 동일한 건설업자와 시공계약 및 제작 · 납품계약을 별도로 분리하여 체결한 경우, 이를 1건의 하도급계약으로 간주 하여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에 포함

1-3 하도급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 (현행) 하도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원도급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비하여 하도급자 권리보호에 미흡
- (개선)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원도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② 하도급 대금지급 명확화

2-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개선

- (현행) 상호협력평가 결과 우수업체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우려가 없는 업체도 의무적으로 지급보증을 하게 되어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
 - * 1,000억 공사의 경우 약 4억4천만원의 보증수수료 부담(전체공사비의 약 0.44%)
- (개선)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 신용평가 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이상인 경우, 하도급대 금 지급 보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면제대상을 구체화

2-2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 명확화

- (현행) 선급금에 대한 명확한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하도급자가 공사를 착수하는데 지장 초래
- (개선)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준공금 · 기성금과 동일하게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하 도록 명확히 규정

2-3 하도급 건설공사 검사완료 시기 명확화

- (현행) 원도급자가 하도급공사의 준공 등 통지를 받은 때 10일 이내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검사결과를 하도급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자는 공사대금을 제때 청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개선) 원도급자가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③ 하도급 운영시스템 합리화

3-1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현행) 상호협력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상생협력에 필수적인 대기업의 참여가 저조
- (개선)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
 - *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3~6% 가산
 - * 시공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건설공사 가능 입찰 규모 결정

3-2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정보제공 확대

- (현행) 원도급자는 건설공사 관련 정보를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한 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에 하도급할 공사내용 등 기본사항만 기재토록 되어 있어 발주자가 하도급률 등 하도급 관련 주 요핵심 정보를 파악하기 곤란
- (개선)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기한, 지급횟수, 선급금 등 관련 항목을 추가

3-3 건설하도급 분쟁해결 실효성 강화

- (현행) 건설공사 관련 분쟁발생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외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도 가능하지만, 건설사의 인식부족으로 중재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저조
- (개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상에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명시하여 건설분쟁 중 재 활성화

3-4 전문건설업 등록업무의 전문성 제고

- (현행) 현재 전문건설업 등록업무는 관할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의 활용이 불가능하여 내실있는 등록심사에 애로
- (개선) 전문건설업 등록관련 업무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308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보의무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이므로, 개정내용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또한, 지진에 대비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은 '88년 제도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지진발생 가능성대비 국민부담 증가 우려로 인해' 09년 이후 소규모로의 추가 확대없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지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진 위험이 큰 지역에 위치한 주요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지진구역 I 지역의 중요도 특 건축물을 내진성능 확보 의무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시기를 대통령령 시행령 내용에 맞도록 조정(안 제58조 본문 개정)
 - 1) 영 제32조가 개정되어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영 제32조'를 '영 제32조제2항' 으로 수정하고, 제출시기를 삭제
- 나. '지진구역 I'에 위치한 '중요도 특' 건축물을 내진성능 확보 대상으로 추가(안 제61조제1항 신설)
 -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0에서 정하는 지진구역 I 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1 상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대상으로 포함.

3. 의견제출

이『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로 2014년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 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의견과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044-201-3758, 3760, 팩스 044-201-557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제2호의 "영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을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91조의3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 I 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1조의 본문을 제2항으로 한다.

- 영 제91조의3제5항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설계도서 중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설계도서 중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지반의 내력이나 지하수위(地下水位)의 변동에 관한 사항
 - 3.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설계도서 중 구조도와 별도로 작성된 상세 도면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u>영 제32조</u> 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11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시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u>영 제32조제2항</u> 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u>대해서는 다음</u>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 계 확인서	1. (현행과 같음)
2. <u>영 제32조</u> 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 설계 확인서	2. <u>영 제32조제2항</u> 에 따른 <u>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u> 건축물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6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신 설 〉	제6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영 제91조의3제1항제5호에 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 역 1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91조의3제5항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설계도서 중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설계도서 중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지반의 내력이나 지하수위(地下水位)의 변동에 관한 사항 3. 주요구조부에 대하여「건축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설계도서 중 구조도와 별도로 작성된 상세 도면에 관한 사항.	② (현행 제61조 본문과 같음)

[별표 10] 〈신설 2009.12.31〉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제56조제2항관련)

지진구역	해당 행정 구역	지역계수S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I	경기도, 강원도 남부(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북동부(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장성군, 장흥군, 화순군), 경상북도, 경상남도	0.22
II	강원도 북부(속초시, 춘천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전라남도 남서부(목포시, 강진군, 고흥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제주도	0.14

법령 정보

[별표 11] 〈신설 2009.12.31〉

<u>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u>

중요도	특	1	2	3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 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 국·전신전화국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 급시설이 있는 병원	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	1. 중요도 (특), (1), (3)에 해당하 지 않는 건축물	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2. 가설구조물
중요도계수	1.5	1.2	1.0	1.0

[별표 12] 〈신설 2014.2.7〉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제60조 관련)

건축물의 내진등급	건축물의 중요도	중요도계수(IE)
특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1.5
I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1	1.2
II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2 및 3	1.0